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04. 02.
- 회부일 : 2018. 04. 04. (의안번호 : 18-24)

2. 제출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연장

개정전 존속기한	개정후 존속기한	연장기간
2018년 5월 30일까지	2023년 5월 30일까지	5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예산조치 : 향후 조치필요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 시행관련, 규제·부패·갈등·성별 등 분야별 사전영향평가 협의사항의 경우 해당내용 없음

5. 검토의견

이건 조례는 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임.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5월30일까지로 만료되어 5년 연장한 2023년 5월30일까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재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